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3
----------	-----

2022. 12. 1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2년 11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6일
-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의 명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0. 12. 10.)됨 따라 이를 바로잡고,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4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조례에 인용된 법률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20년 6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지 않아 개정 소요가 발생함
- 이 조례는 2003년 제정되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의 수정과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2조는 정의의 근거가 되는 인용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 제2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근거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20년 6월 9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18. 2. 21.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6. 9. 전부개정)
제2조(정의)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¹⁾ 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수단으로 그 의미가 달라 개정 이전의 정의를 사용 시 법적용의 오류 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함
- 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으로 개정한 것은 정부 고시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함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안 제7조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의 ‘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자구를 정비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기존에 복잡하고 길게 서술된 문장을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하여 문장의 복잡성을 피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기술된 약칭 사용과 법령 이름에 사용하는 홑낫표(「 」)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 다만, 2020년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와 개정하지 않았어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를 “뜻은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를 “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를 “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를 “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를 “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를 “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를 “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를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를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을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이란「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 를 “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 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도” 를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충청북도와” 를 “도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연” 을 “출연금”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을 “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하여야 한다” 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를 “수”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4. -----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6.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	8. -----이란 「중소기업기본

현행	개정안
<p>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법」 제2조----- -.</p>
<p>9. “첨단중소기업”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p>	<p>9. ----- ----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p>
<p>10.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10.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p>
<p>1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p>	<p>11. -----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p>
<p>제4조(사업) ①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제4조(사업) ①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국가, 도, 시·군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진흥사업</p>	<p>8. ---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p>
<p>9. (생략)</p>	<p>9.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 -----.</p>

관련법령 발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사 유

-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기술적인 정비 사항임
-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결론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